

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2. 10. 18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2.10.9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2.10.16.
- 다. 상정일자 : 제172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12.10.18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구 본 수 교육지원과장

가. 제안이유

친환경 학교급식 확대에 따른 친환경 급식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친환경 급식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, 타법개정에 따른 조문을 변경 및 「알기 쉬운 법령기준」에 따른 법률용어의 순화를 반영하여 조문상의 일부 표현을 변경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1) 목적(안 제1조)

- 기존의 목적에 도·농간의 지역교류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

발전을 추구한다는 목적을 추가

2) 정의(안 제2조)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에 따른 사업의 정의 내용 추가
- “친환경 학교급식 프로그램” 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식생활교육과 농촌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하는 학교급식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
- 「농산물품질관리법」, 「수산물품질관리법」 및 「축산물가공처리법」 개정에 따라 법규명을 「농수산물품질관리법」 및 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으로 변경함
- “~이라 함은” 용어순화를 반영하여 “~이란” 으로 변경함

3) 경비의 지원 등(안 제5조)

- 구청장은 학교급식지원과 연계하여 “친환경 학교급식 프로그램”을 운영 또는 지원할 수 있다.

4)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(안 제8조)

-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우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식품안전추진반장을 해당 직무수행자인 “위생과장”으로 변경

5) 심의위원회의 기능(안 제9조)

- 심의위원회 기능으로서 “친환경 학교급식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지도”에 관한 사항 추가

6) 지도점검 및 정보공개

-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위해 “정보공개에 관한 규정”을 추가함

3. 검토보고 (김건재 전문위원)

0 본 조례안의 제정은 2011년부터 시작된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한 이해와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한

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「축산물가공처리법」이 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으로, 「농산물품질관리법」이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으로 각각 개정됨에 따라 타법개정에 따른 조문을 변경하며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8. 기타 : 없음